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윤기섭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9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윤기섭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
김경훈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
서상열, 유정인, 윤영희,
윤종복, 이상옥, 이성배,
이원형, 이종태, 정준호,
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이행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‘공사시행자’로만 규정하고 있어, 발주처(예: 특수목적법인)와 시공사 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.
-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, 교통소통대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시공사에도 명확히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.
- 이번 개정안에서는 ‘사업시행자’와 ‘이행 주체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,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, 실제 이행 의무는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 모두에게 부과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,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.
- 사업시행자가 이행 주체에게 교통소통대책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,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사업시행자’와 ‘이행 주체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. (안 제2조제4항과 같은조제5항 신설)
- 나.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4조제1항, 제5조, 제7조)
- 다. “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변경함. (안 제9조제8항)
- 라.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변경함. (안 제10조제1항)
- 마. “공사시행자”와 “정당한”을 “사업시행자”와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 정당한”으로 변경함. (안 제10조제2항)
- 바. “공사시행자에게”와 “공사시행자가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”와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”로 변경함. (안 제11조제1항)
- 사.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11조제2항 신설)
- 아. “공사를 시행한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13조제1항과 같은조제2항)
- 자.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14조의 제목과 제1항)
- 차.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14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
- 다. 기타 : 신.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사업시행자”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
5. “이행 주체”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계약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한다.

제9조제8항 중 “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, “정당한”을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 정당한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

부분) 중 “공사시행자에게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게”로, “공사시행자가”를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이행 주체의 위반이 사업시행자의 지시 등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에는,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사를 시행한 자”를 각각 “사업시행자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)”을 “(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사업시행자는 이행 주체에게 제10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, 정당한 사유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<u>“사업시행자”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</u>
<u><신 설></u>	5. <u>“이행 주체”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계약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.</u>
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 ① <u>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.</u>	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 ① <u>사업시행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교통소통대책의 검토)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,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대행자지정)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의 구성·운영) ① ~ ⑦ (생략)

⑧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 등에 요청할 수 있다.

⑨ (생략)

제10조(시장의 조치) ① 시장은 「도로법」 제97조에 따라 공사

제5조(교통소통대책의 검토) ---

-----사업시행자

-----.

제7조(대행자지정) 사업시행자

-----.

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

-----사업시행자 및
이행 주체-----
-.

⑨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시장의 조치) ① -----
----- 사업

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3조(원상회복 및 복구계획)
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단,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

시행자 및 이행 주체-----
-----.

②-----사업시행자-----

----- 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 정당한 -----

-----.

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 ① -----
----- 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게 -- 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 -----

-----.

② 이행 주체의 위반이 사업시행자의 지시 등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에는,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할 수 있다.

제13조(원상회복 및 복구계획)
① 사업시행자-----

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
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
시장에게 제출하고, 제출된 복
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
의결한다.

②시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
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
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
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
있다.

제14조(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
준수사항) ① 공사시행자 및 제
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
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
로 작성하고, 공사착공 전까지
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
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
출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②-----

사업시행자-----

-----.

제14조(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
준수사항) ① 사업시행자 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사업시행자는 이행 주체에게
제10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
준수하도록 지시하고, 정당한
사유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준수
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에 의한
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
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,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조항 및 사업시행자의 이행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